

정 오 표

- 이수진, 「노동법 쟁점정리노트」 (제7판), 경연

- 다행히 큰 오류는 없습니다만,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 교재 출간 이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기출 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기나 기타 교재와 관련한 의견 등이 있으시다면 제게 자유롭게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이메일 : theviolett@naver.com). 부족한 교재임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 줄수에는 목차도 포함

쪽	줄	현 행	수 정
6	3	근기법상의 보호를	근기법 등의 보호를
8	3	근기법상의 보호를	근기법 등의 보호를
13	밑12	(4) 사회적 신분	(5) 사회적 신분
40	밑10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u>점등을</u> 종합하면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u>점 등을</u> 종합하면
43	밑5	2. 취업규칙의 효력(근기법 제97조 및 제96조)	2. 취업규칙의 효력(근기법 제96조 및 제97조)
56	밑12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판 2011다23149)고 보았다.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판 2011다23149).
58	밑3	<u>일비</u> 에 상당하는	<u>일비에</u> 상당하는
74	밑7	사적 재산영역으로 <u> 옮겨져</u>	사적 재산영역으로 <u> 옮겨져</u>
98	2	포괄임금제란 ① 기본임금을	포괄임금제란 <u>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u> ① 기본임금을
102	5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u>일정한</u> 요건을 갖춘 연차유급휴가는
112	1	<u>그다음</u> 해에도	<u>그 다음</u> 해에도
116	밑2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노동위원회(근기법 제28조 제1항)나 법원을 통해
127	밑9	근무성적 불량을 <u>이후로</u>	근무성적 불량을 <u>이유로</u>
127	밑2	처분을 <u>한사안</u> 에서	처분을 <u>한 사안</u> 에서
128	12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에 기하여	(1)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에 기하여
128	밑11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2)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138	밑2	비위행위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140	밑6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140	밑3	◎22년 변모	◎24년 변호사 / 22년 변모
142	밑4	2. 하자의 사유	3. 하자의 사유
156	8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160	7	◎14년22년 노무사 / 22년 변모	◎14년22년 노무사 / 24년 변호사 / 22년 변모
166	밑4	근기법은 제24조 제5항에서 경영상해고의 4가지 요건을	근기법은 제24조 제5항에서 경영상해고의 4가지 요건을
190	1	I. 의 의(절차적 정당성 일반론)	I. 의 의(절차적 정당성 일반론, p.139 참고)
195	밑1	(폐업해고 - p.163 참고)	(폐업해고, p.163 참고)
226	7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제공사업(제5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제공사업(제5호)
226	밑11	(4) 영어회화 전문 강사(제6호)	4. 영어회화 전문 강사(제6호)
227	1	(5) 초단시간 근로자(제6호)	5. 초단시간 근로자(제6호)
227	7	(6)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제6호)	6.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제6호)
227	밑10	합의를 하더라도 그 무효이다	합의를 하더라도 그 무효이다
234	밑2	노동조합이 사용자업주와 합의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업주와 합의하여
242	밑1	대법원 2019두55262	대판 2019두55262
244	8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258	1	최근 판례는 근기상 근로자성과는	최근 판례는 근기법상 근로자성과는
266	밑11	2.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이하 내용 참고)	2.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p.267 참고)
273	밑4	2)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2) ①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274	3	한편, 기업별노조의 경우	② 한편, 기업별노조의 경우
274	7	(1) 의의	삭제
296	밑3	6. 유일교섭단체조항의 문제	6. 유일교섭단체조항의 문제
299	밑1	상부 연합단체 교섭권한을	상부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304	제목	105. 교섭단위의 결정 ◎ 20년 변모	105. 교섭단위의 결정 ◎ 24년 변호사 / 20년 변모
312	밑7	IV.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 23년 노무사 / 20년22년 변모	IV.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 23년 노무사 / 24년 변호사 / 20년22년 변모

330	제목	114. 평화의무	114. 평화의무 © 21년 노무사 / 17년 변모
353	밑13	(대판 22017다46274).	(대판 22017다46274).
357	밑7	<u>전격성 판단이 부정되어</u>	<u>그 전격성 등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u>
384	6	민법 제103에 반하는 것인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인지
413	10	자바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1) 자바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413	13	여기서 자바개입 의사는	(2) 여기서 자바개입 의사는
418	밑2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424	14	노동3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	노동3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
427	밑1	(노조법 제85조 제5항제95조)	(노조법 제85조 제5항제95조)